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42,273,679	7,268,210
일반회계	230,009,940	6,900,298
특별회계	12,263,739	367,912
기타특별회계	12,263,739	367,912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69,141	14,07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57,830	10,735
주차장특별회계	10,326,373	309,791
기반시설특별회계	1,110,395	33,31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,200백만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679,47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